



느린마을양조장

[등록번호] 20110100306

www.slowbrewpub.com

[최초 등록일] 2011.07.27

[최종 등록일] 2025.01.16.

느린마을 양조장

정 보 공 개 서

“(주)배상면주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배상면주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512

[사 업 장]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7-2

[전화번호] 1544-8550 [팩스번호] 02-6917-8828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02-6917-8825



배상면주가

<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9.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느린마을 양조장의 철학

느린마을 양조장의 생각들 3S



1 Slow 느리게

느린마을 양조장에서 시간의 주인은 술입니다.
미생물과 술의 속도를 오히려 사람이 천천히 따라 가는 곳, 술 본래의 개성이 자연의 속도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
느린마을 양조장에서 당신은 우리 조상들의 발효, 양조 음식문화, 그 느림의 미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Simple 단순히

느린마을 막걸리는 어떤 인공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은 자연이 만들어낸 술입니다.
느린마을 막걸리에는 쌀과 누룩, 효모 그리고 물만 들어갑니다.
보관을 길게 하기 위해, 단맛을 높이기 위해, 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Safe 안전하게

느린마을 양조장의 모든 제품은 100% 국산 원재료로 만들어져 안전한 것은 기본이며, 배상면주가의 친환경 발효기술과 환경정책으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빚은 술을 누가 드시는지, 내가 먹는 술을 누가 빚는지 우리마을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열린 양조장입니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등 일반정보

상호	사용브랜드	주소				
(주) 배상면주가	느린마을 양조장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512			
			[서울사업장]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7-2			
	설립일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1999.08.20	1999.08.20	1999.10.15	배영호		
	법인등록번호	115411-0020356		사업자등록번호	127-81-34503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관계	명칭	상호	영업표지	사업기간	주소	전화번호
본인	배영호	(주)배상면주가	느린마을 양조장	99.08~현재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512	1544-8550
사용인(임원)	구본술	"	"	"	"	"
사용인(임원)	이성복	"	"	22.4.22~현재	"	"
사용인(임원)	신주옥	"	"	22.8.30~현재	"	"

※ 특수관계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실: **해당없음**

※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 : **당사는 외국기업이 아님**

3. 가맹본부의 3년간 인수·합병 사실 : **당사는 최근 3년간 인수·합병 사실이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느린마을 양조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명칭	상호	상표(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느린마을 양조장	느린마을 양조장 OO점	느린마을 등록 41-0273167	-	느린마을양조장&푸드 느린마을양조장&펍

※ 그밖의 영업표지(느린마을양조장&푸드, 느린마을양조장&펍)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3개년도)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18,968,276	11,218,809	7,749,467	24,881,674	2,026,593	1,946,322
2022	19,674,872	10,393,578	9,281,293	26,736,132	1,795,286	1,761,450
2023	19,344,723	9,434,832	9,909,890	27,161,379	1,098,792	1,054,060

: ※ **별첨 1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비고
관련 임원	배영호	대표	08.06~현재	(주)배상면주가 대표이사	경영 총괄	
관련 임원	구본술	전무	"	(주)배상면주가 이사	재무 총괄	
비관련 임원	이성복	감사	22.4.22~현재	(주)배상면주가 감사	감사	
비관련 임원	신주옥	이사	22.8.30~현재	(주)배상면주가 이사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12. 31	2	3	4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당사는 최근 3년동안 본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음

9.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명칭	권리내용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느린마을 양조장	영업장 내외 사용	등록 2011.07.15	등록 40-0872999	(주)배상면주가	2031.07.15
느린마을	영업장 내외 사용	등록 2013.12.13	등록 41-0273167	(주)배상면주가	2023.11.13
	영업장 내외 사용	등록 2015.03.30	등록 41-0317474	(주)배상면주가	2025.03.30
	영업장 내외 사용	등록 2017.09.07	등록 40-1283746	(주)배상면주가	2027.09.07
	영업장 내외 사용	등록 2018.09.05	등록 40-1394248	(주)배상면주가	2028.09.05

[주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가능
※ 상기의 지식재산권 중 출원 중인 상표는 관계법령으로 보호를 받지 못함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11년 6월 30일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배상면주가	느린마을 양조장	배영호	2016.4월~2016.6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7-2
(주)배상면주가	느린마을 양조장&펍	배영호	2016.7월~2022.4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7-2
(주)배상면주가	느린마을 양조장	배영호	2022.4월~현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7-2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느린마을 양조장	대분류 주점	소분류(주요상품) 느린마을막걸리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7	1	8	7	1	10	9	1
서울	7	6	1	7	6	1	8	7	1
부산									
대구	1	1	0	1	1	0	1	1	0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1	1	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16	0	1	8	0	7
2022	7	0	0	0	0	7
2023	7	2	0	0	0	9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느린마을양조장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 말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개월미만 영업제외
		연간평균매출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9	538,533	9,964	1,714,495	17,203	108,698	2,127	※2곳제외
서울	7	571,313	10,284	1,714,495	17,203	108,698	2,127	※1곳제외
부산	1	해당없음						5곳미만
대구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1	해당없음						5곳미만
강원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총 9곳 중 7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9	1,428일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지사,지역총판)의 일반현황 : 해당 없음

10.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1,044,654	(비공개)	-	
광고선전비	소계		895,348	(비공개)	-	
판매활동비			149,306	(비공개)	-	

※ 상기 광고 및 판촉비용은 기업전체 관련 비용으로 당 가맹사업 관련 광고 및 판촉비용은 이보다 적음

11.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일반정보

예치기관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양재남지점)	기업담당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02-579-1840 (내선51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예치방법은 우리
: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
: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

[주의] 귀하는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사항 주의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됨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상기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음

12.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해당 없음



2.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해당 없음**
3.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해당 없음**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최초 가맹금

내역	금액 (천원,VAT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7,7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해지	가입대가, 개설지원 대가 및 영업비밀 전수 대가로 개설 이후 반환되지 않음	
최초 교육비	5,500	"	최초교육개시 1일 전 계약해지	교육개시 이후 반환 될 수 없음	숙박비, 교통비는 별도
[총액]	13,200				

2) 보증금·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내역	금액 (천원,VAT없음)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을 제외하고 반환	별도의 이자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단위: 천원,VAT포함)

내역	금액 (천원,VAT포함)	비고
가맹비	7,700	
최초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VAT없음
[총액]	16,200	

4)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단위: (천원,VAT포함), 기준 : 점포크기-100㎡(30평)]



내역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가맹본부/ 지정업체(미정)	59,400	1,980	별도 약정에 따름	발주 전 계약취소	※ 기준 평수 이하의 기준 평수의 금액 이 적용됨
주방설비(양 조/영상포함)	가맹본부/ 지정업체(미정)	48,400	약1,613	"	"	
주방기물	가맹본부/ 지정업체(미정)	12,100	약403	"	"	
가구	가맹본부/ 지정업체(미정)	5,830		"	"	
간판, 사인, 액자 등	가맹본부/ 지정업체(미정)	8,800		"	"	
오픈초도비용	가맹본부/ 지정업체(미정)	4,950		"	"	오픈 베너, 유니폼, 소 품 외
[총액]		139,480	4,649			

※ 별도비용 : 철거, 도시가스설비 철거 및 추가, 간판, 전기증설, 냉난방기, 정화조, 외부화장실공사, 외
부상하수도, 외장추가, 소방공사, 각종인허가 비용 등, 초도물품은 주문량에 따라 금액에 증감이 있음

※ 제주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각 유형별 전체 비용에서 **[5,500]천원(VAT포함)**이 추가됨

※ 양조 프로그램 기판은 무상 임대하며, 계약종료 후 회수함

※ 상기의 필수설비와 POS는 가맹본부에서 진행하며, 인테리어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체시공을 할 수 있습
니다. 이때 자체시공이라도 당사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
니다. :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한 관리·감독 비용 : **3.3㎡ 당 [660]천원(VAT포함)**

[※주의!] 264㎡(80평)이상 점포의 경우 개설비용은 상호 사전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주의!] 상기 금액은 추정치이며 매장평수나 매장상황에 따라 금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입지 선정 → 본사 담당자 배정 → 기존 가맹점 영업구역과의 영업지역권 조사 → 영업지역권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경우 점포 확정

[※주의!] 점포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선정하여야 하며, 주세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 적합한
점포와 시설일 것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양조인 육성교육 이수	만19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필요시) 아래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 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주의!] 막걸리 제조면허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일 것 (주세법 등 관계법령 참조)



※ 관련 법령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참조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가. 「조세범 처벌법」/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라. 「식품위생법」/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같은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제6호 및 제59조제 1호·제2호·제6호·제7호·제7호의2·제7호의3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 방법·공급 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의 분할납부 제도 :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가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영업 중 정기 또는 비정기 지급비용



느린마을양조장

구분	지급대상	금액(천원,VAT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원부재료 비용	가맹본부	주문량 비례	선결제	상품의 미제공	상품의 제공	
로열티	가맹본부	월 550(80평미만) 월 880(80평이상)	익월15일	후불로 반환없음	후불로 반환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해당 가맹점 총수에 대비하여 분담 (아래 참조)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 됨	전국광고 지역광고
보수교육	가맹본부	년 330(년2일)	통지 후 7일 이내	교육일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 됨	※교통비, 숙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실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실비				교체·보수 필요 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 까지			

※ “보수교육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 지급하여야 함

※ 광고분담기준

주요 광고내용	가맹본부부담	해당 가맹점사업자 부담
가맹점모집광고 (전국, 지역)	100%	0%
그 외 광고(전국, 지역)	50%	50%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음

구분(기준:2023년)	비고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 당사는 가맹점에 원부재료를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지정거래처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어 차액가맹금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참조)

3) 재고관리·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QSC	제품의 품질관리 포함한 점포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	수시	문의: 가맹관리팀
재고관리	실 재고와 장부상 재고비교	수시	〃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누락에 대한 조사	수시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없음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음.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의 손해발생시 책임을 부담함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며,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임.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초기비용
: 운영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이 당사로 **교육비[5,500]천원(부가세포함)와 계약이행보증금[3,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함. 단, 양수인이 신규로 원할 경우 신규에 준하는 가맹비, 최초교육비를 예치하여야 함
- 4) 계약 종료 후 조치 :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관련 계약조문 제39조

-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와 인테리어 디자인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18조 제3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양조 프로그램 기관이 포함된 양조기 컨트롤박스는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회수하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요주의!]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함

1.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면으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 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단위:천원)	비고
배상면주가 포천LB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배상면주가 고창LB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주)에드푸드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음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수취여부

※ 해당없음



3.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용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판매 상품 /용역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

[※주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귀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용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점포는 내방하는 일반소비자	막걸리	왼쪽의 거래상대방 외에는 기재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음

[※주의!] 귀하는 점포를 내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만 막걸리를 판매할 수 있으며, 다른 경로로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의!] 당사는 가맹사업이 아닌 일반 유통형태(총판, 대리점)의 막걸리 제조·유통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양당사자는 확인합니다.

[※주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	권장가격(단위:원)	가격통보 방법	비고
※별첨 판매 상품 /용역리스트 참조	※별첨 판매 상품 /용역리스트 참조	사전 서면 통지 (수정 시 홈페이지에 공지)	판매가격은 본사의 중요 권장사항이며 지역 특성상 또는 경쟁력 제고 등으로 조정 필요할 경우 본사와 사전협의가 필요함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실시와 그 구체적인 내용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막걸리전문점	느린마을 양조장	없음



[중주의!] 당사는 가맹사업이 아닌 일반 유통형태(총판, 대리점)의 막걸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맹사업이 아닌 유통형태의 사업이 영업지역 내에 입점될 수 있음과 이러한 유통형태의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매장에 막걸리를 제조/유통시킬 수 있음을 양 당사자는 확인함. 단, 가맹본부도 제조방법, 원료, 판매가격, 제품명이 당해 가맹사업과는 차별될 수 있도록 노력함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설정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방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받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 사 검토 → 영업지역 변 경(안) 작성 → 가맹점사 업자에게 서면 통지 → 영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 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음

- ①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 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느린마을양조장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유통	이마트	느린마을막걸리 외 10종	일반제품
유통	홈플러스	느린마을막걸리 외 15종	"
유통	롯데마트	느린마을막걸리 외 12종	"
유통	이마트트레이더스	느린마을막걸리 외 1종	"
유통	농협하나로마트	느린마을막걸리 외 7종	"
유통	탑마트	느린마을막걸리 외 4종	"
유통	김스클럽	느린마을막걸리 외 1종	"
유통	이마트에브리데이	느린마을막걸리 외 1종	"
유통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느린마을막걸리 외 4종	"
유통	GS슈퍼마켓	느린마을막걸리 외 5종	"
유통	GS25	느린마을막걸리 외 5종	"
유통	CU	느린마을막걸리 외 5종	"
유통	세븐일레븐	느린마을막걸리 외 6종	"
유통	미니스톱	느린마을막걸리 외 5종	"
유통	이마트24	느린마을막걸리 외 5종	"
유통	와인앤모어	느린마을막걸리 외 1종	"
유통	씨스페이스	느린마을막걸리 외 1종	"
유통	빅마켓	느린마을막걸리 외 6종	"
유통	코스트코	느린마을막걸리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주의] 가맹본부는 관련법상 온라인판매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에서 느린마을 막걸리 등 일부품목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귀하의 영업지역은 향후 본사의 동일한 브랜드가 아닌 유사하지만 다른 컨셉의 다른 브랜드 직영점이나 가맹점은 귀하의 영업지역 안에 출점 가능함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78%	22%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계약갱



신일로부터 [1]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주의]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짐.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음.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34조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방법, 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① 계약 종료 사유 - 기간 만료, 종료절차 - 상기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참조
- ②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35조

-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상품,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원·부재료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지절차 :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임.

[중주의!]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5조 (참조 제 27조 2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음

관련 계약조문 제6조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 모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당사의 협의절차는 다음과 같음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환매제도가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의 : 가맹본부)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개월 전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 이행보증금을 납입함.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음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대리행사·위탁 등 (문의 : 가맹본부)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	이전범위	절차	비고
상속	계약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한 자에 대해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자, 가맹본부의 상속에 관한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인에게 별도의 교육비 부담
대리행사	원칙적으로 금지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본사의 사전 승인 하에 가능	가맹점 운영에 대한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대리행사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계약자, 대리인, 가맹본부의 면담 및 서류작성 → 대리경영	대리인에게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문의 : 가맹본부)



느린마을양조장

- 1)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동일 업종을 운영 못하며, 귀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계약위반 등 귀책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종료 후 1년 간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 가맹사업과 동종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음 (담당 : 가맹관리팀)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막걸리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담당 : 가맹관리팀)

영업시간	영업일수(강제)	비고
14:00 ~ 02:00(12시간)	365일 운영(단, 설, 추석명절협의)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문의 : 가맹본부)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주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권장종업원 수 : 2인 이상, ○ 직접근무 여부 : 가맹점사업자 직접근무, ○ 대체인력 : 해당없음

-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담당 : 운영팀)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품질(Q)	담당자 매장 방문 → 확인 → 양조공정관리일지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방문
서비스(S)	담당자 매장 방문 →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청결도(C)	"	"
회계 감사	"	"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됨 (**※ 별첨 가맹점체크표**)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구분	주요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해당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광고 계획 공고→가맹점분담액 명세서를 통지→통지 후 7일까지 가맹점분담액 입금→광고 시작 →가맹점사업자 사용내역 요청시 당사는 제시함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지역)
	그 외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해당가맹점 총수에 대비하여 분담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월별 판촉 행사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사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음

관련 계약조문 제40조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관련 계약조문 제9조

- 가맹점사업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영업표지, 전수 또는 교육받은 막걸리제조방법, 노하우(know-how) 및 음식레시피를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에 대한 통일성 내지 동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내지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주의!]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 계약조문 제38조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 위반, 일방적 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일금 오십만원(W5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소요기간, 소요비용

필요한 절차		소요기간	소요비용	비고
구분	내용			
가맹희망자 문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계약체결 15일전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입지 주위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지정기관에 예치	계약 당일 지급	5페이지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6페이지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35일		
최초교육 실시	- 점포운영 및 조리 양조 교육실시	약 14일		
인허가 사항	- 제조, 판매, 외식사업 관련	약 4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합계]			5~6페이지 참조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 및 비용은 평균적인 직영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64㎡(80평)이상 점포의 경우 개설비용은 상호 사전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주의]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 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문의 : 가맹관리팀)



분쟁해결절차

비고

분쟁 발생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면담 → 당사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 시 분쟁 종료

※ 상기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관련 계약조문 제44조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주의!]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지정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3일	300만원 한도	
판촉장려금	해당사항없음				
판촉지원	해당사항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사항없음				
반품지원	해당사항없음				
마일리지	해당사항없음				
CRM	우수고객에 대한 고객 유입 DM발송	전 가맹점 해당	분기별 1회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테스터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공급 지원	전 가맹점 해당	신제품 출시 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02-6917-8825/6)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팀 (02-6917-8825/6)



4. 신용 제공 등 내역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 고
해당없음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 여부
개업교육	아래참조	실습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 하기 이전까지 이수하여 야 함	필수 교육
양조인 육성교육	"	집단강의 (이론) 실습교육 (체험,실무)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 하기 이전 주류제조면허 발급 이후, 양조인 변경시 사전 이 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보수교육	설비, 서비스, 영업방침변경 등 가맹점 유지교육	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 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 개업교육 내용 : 매장 오퍼레이션 및 관리, 서비스 및 마케팅 교육, 특판영업, 제조 오퍼레이션, 공무
실무, 분석기술, 위생 및 환경, 정보시스템 교육, 세무교육, 현장실무교육

※ 양조인육성 교육 내용 : 전통술 또는 전통발효식품 제조에 대한 교양 및 전문지식, 체험과 실무기술,
품질관리를 위한 양조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 교육·훈련비용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천원, VAT포함)	비고
최초교육	14일	5,500	최초 계약시 필수이수
보수교육	2일	년330	필수 이수

※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함.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음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불참할 경우 불이익



관련내용	관련 계약조항
○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될 수 있음	제14조, 제19조
○ 당사가 정한 필수교육 불참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됨	제38조(제30조1항참조)
○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제37조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양재본점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7-9 배상면주가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1년 8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81,706천원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매장POS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21, 2022, 2023년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가맹점 체크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필수 양조설비/부속기기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급 상품/원부자재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판매 상품/용역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가맹점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기타 (직영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치신청서>

[서식]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느린마을양조장]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상기 자료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

..... ○ (절취선)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느린마을 양조장]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상기 자료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